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희걸 의원(찬성자 10명)

나. 의안번호 : 제1251호

다. 발의일자 : 2020. 2. 3.

라. 회부일자 : 2020. 2. 4.

2. 제안이유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규정을 정비함

(안 제5조제2항)

- 연 6퍼센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

나. 점용료등의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8조)

- 「국세징수법」 제21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부터 제32조를 따름

다. 징수교부금을 정비함(안 제13조)

- 변상금 : 100분의 40 → 100분의 50

라.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안 별표1)

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부처 등 변경사항 반영함
(안 제12조 및 별표1, 비고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하천법」, 「정부조직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별 의견

가. 점용료등¹⁾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

- 안 제5조제2항은 동 조례 제5조제1항2)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책정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

1) 점용료등이란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 사용료를 말함.

2)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하천관리청은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³⁾(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점용료등의 분할납부와 관련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이 2016.6.28.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개정(대통령령 제2782호)됨에 기인한 것이며, 이 경우 이자율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약 1.52% 수준으로 종전 이자율인 6%보다 크게 낮아 점용자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서울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실을 간과하여 지난 4년간 본 조례를 상위법과 다르게 운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과오납된 점용료등은 현재까지 총 27건(1,324천원)으로 파악됨.

[표 2] 2016~2019년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실적

(단위 : 천원)

분할납부 건 수	총납부액	원금	이자	초과납부 건 수	초과납부 금 액	비고
75	556,538	550,980	5,558	27	1,324	

*초과납부건에 대한 적정이자는 2%로 일괄 적용함

- 따라서,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정산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3)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 ④ 생략

나. 징수교부금 비율 조정(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구청장이 변상금을 징수하여 서울시에 납부할 경우 그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징수교부금)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이 점 용료등을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할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1. (생략) 2. 변상금의 경우 <u>100분의 40</u>	제13조(징수교부금) ----- ----- ----- ----- 1. (현행과 같음) 2. ----- <u>100분의 50</u>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6.7.12.일 개정 (대통령령 제27328호)됨에 따른 것으로, 이 역시 상응하는 조례개정 시기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음.
- 이처럼 조례 개정을 간과한 것은 교부금을 받는 자치구나 교부금을 주어야 하는 서울시 모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법에 근거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상위 법령 개정과 집행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조례 개정으로 변상금 교부율이 10%포인트 상향될 경우 연간 교부액이 '19년 기준 약 1,9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표 4] 2016~2020년 자치구 징수교부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1,340,000	1,340,000	1,100,000	1,100,000
집행액 (집행률)	1,199,789 (89.5%)	995,786 (74.3%)	951,485 (86.5%)	-
잔액	140,211	1,789,475	148,515	-

* 점용료 징수교부금 및 변상금 징수교부금

다. 점용료등의 소액불징수 금액 조정(안 별표1)

- 안 별표1의 비고1은 당초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하천법 시행령」 별표3이 개정(대통령령 제29515호, 2019.2.8.)됨에 따라 미부과 금액이 5천원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임.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관련)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하천수 사용료	가.~나. (생략) 다.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 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라. (생략)	10.하천수 사용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_____ _____ _____ 환경부장관 _____ 라. (현행과 같음)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_____ _____.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 _____	

현 행	개 정 안
<p>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u>국토해양부장관</u>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p> <p>3.~7.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국토교통부장관</u></p> <p>-----</p> <p>3.~7. (현행과 같음)</p>

- 이 경우도 서울시가 상위법 개정 사실을 간과하여 지금까지 총 8건 (31,820원)의 과오납이 발생한바 점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라. 용어 등 정비(안 제8조, 안 제10조 제목, 안 제10조제3항, 안 제12조, 안 별표1)

- 먼저, 안 제8조는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따르던 것을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32조4)를 따르

- 4)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

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표 8]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가산금 및 독촉) 관리청은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따른다.	제8조(가산금 및 독촉) 관리청은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부터 제32조를 따른다.

- 이는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⁵⁾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삭제(법률 제16098호, 2018.12.31.)되어,
- 대신에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 등에 관련된 사항을 「지방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다음으로, 안 제12조 및 별표1의 비고2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부조직법」이 2013.3.23.일 개정(법률 제11690호)되어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변경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 3. 생략

■ 맺음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 조례 개정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점용료등의 과오납 발생 등 이해당사자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을 초래하였는바, 조속한 시정과 재발방지가 요구된다 하겠음.